



목 포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2호 2020. 12. 18.(금)

공 고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8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공고 제2020-1968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8.

목포시장

1. 개정 이유

- 민선7기 시정 추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별 소속 변경사항 및 분장 사무 등을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팔 : 9국 1실 44과 237팀→ 9국 1실 45과 242팀 (과 ⊕1, 팀 ⊕5)

나. ‘과’ 단위 개편

구 분	개 편 내 용
신 설	○ [관광문화체육국]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 속 변 경	○ [관광문화체육국]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 ⇒ [사업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목포자연사박물관
순 위 조 정	○ [관광문화체육국]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다. ‘팀’ 단위 개편

구	분	개	편	내	용
신	설	○ [여성가족과]	<u>아동보호</u>	○ [관광거점도시추진단]	<u>기획</u>
		○ [관광거점도시추진단]	<u>사업</u>	○ [건강증진과]	<u>감염병대응</u>
		○ [남해수질관리사무소]	<u>수질검사</u>		

구 분	개 편 내 용
소 속 변 경	○ [문예시설관리과] 문학관 ⇒ [문화예술과]
명 칭 변 경	○ [문화예술과] 문학관 ⇒ <u>문학지원</u>
순 위 조 정	○ [여성가족과] 보육, 아동청소년, 여성정책, 드림스타트, <u>아동보호</u> ○ [관광거점도시추진단] <u>기획, 사업</u>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 예술진흥, 도서관운영, 문화시설관리, <u>문학지원</u> ○ [문예시설관리과] 운영, 센터공연, 회관공연, 시설관리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지역보건, 감염병관리, <u>감염병대응</u> , 모자보건 ○ [수도과] 수도행정, 요금, 급수, 누수방지, <u>정수, 기전</u> , 수질검사 ○ [남해수질관리사무소] 관리, 수질, 공무, <u>수질검사</u> , 남약수질관리

라. 업무이관

부 서 명	업 무 명	인수부서
사 회 복 지 과	○ 전시 비축 물자관리 ○ 거주외국인 각종 재해시 응급구호 및 지원	안 전 총 괄 과
문 예 시 설 관 리 과	○ 목포문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문 화 예 술 과
북향수질관리사무소	○ 하수·분뇨유입·유출 수질분석과 시험기기 운영 및 약품처리 관리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마. 업무신설

부 서 명	업 무 명	비 고
자 치 행 정 과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정·현원 관리 ○ 공무직근로자 임면 및 징계 ○ 공무직 인사기록 관리 ○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 운영 ○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정 관리 ○ 공무직 임금결정 및 퇴직금 지급 ○ 공무직근로자 4대 사회보험 업무 ○ 공무직근로자 호봉 관리 ○ 공무직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기간제근로자 임금결정 ○ 기간제근로자 시전심사제 운영	
여 성 가 족 과	○ 보호대상아동 상담·가정환경조사 ○ 보호대상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관광거점도시추진단	○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총괄 관리 ○ 관광거점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 관광거점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관광거점도시 브랜드 구축 ○ 관광 거버넌스 구축	
안 전 총 괄 과	○ 재난관리 시설 운영	
건 강 증 진 과	○ 급성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총괄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4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3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검토 : 해당없음

8.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 2020. 12. 18. ~ 12. 22.(4일간)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행정조직내부 인력 조정 사항이며, 조직개편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축소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1.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121호부터 제1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1.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정·현원 관리
- 122. 공무원근로자 임면 및 징계
- 123.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 124. 공무원근로자 인사위원회 운영
- 125. 공무원근로자 근무성적평정 관리
- 126. 공무원 임금결정 및 퇴직금 지급
- 127. 공무원근로자 4대 사회보험 업무
- 128. 공무원근로자 호봉 관리
- 129. 공무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130. 기간제근로자 임금결정
- 131.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 운영

제12조 중 제8호,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에 제75호부터 제7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5. 보호대상아동 상담·가정환경조사
- 76. 보호대상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77.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예시설관리과장·체육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를 “관광과장·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총괄 관리
2. 관광거점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3. 관광거점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관광거점도시 브랜드 구축
5. 관광 거버넌스 구축

제19조(중전의 제18조)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목포문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장 제5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제2장 제6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 제30조(중전의 제32조)에 제153호부터 제15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3. 전시 비축 물자관리
154. 거주외국인 각종 재해시 응급구호 및 지원
155. 재난관리 시설 운영

제3장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34조 및 제35조로 하고, 제35조(중전의 제37조) 제3항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급성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총괄

제4장 제1절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제36조 및 제37조로 하고, 제2절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제38조 및 제39조로 한다.

제3절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제40조 및 제41조로 하고, 제41조(중전의 제43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하수·분뇨유입·유출 수질분석과 시험기기 운영 및 약품처리 관리

제4절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제42조 및 제43조로 하고, 제43조(중전의 제45조)의 제9호를 삭제한다.

제4장 제5절 제46조 및 제47조를 제8절 제50조 및 제51조로 하고, 제5장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제52조 및 제53조로 한다.

제4장 제5절(제44조 및 제4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제44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5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방호·방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입장권(열람권) 등의 발급·검인·검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3. 재산관리·시설물 종합관리 및 개보수 등 영선에 관한 사항
4. 조경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냉난방, 통신, 전기, 기계, 음향, 소방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6. 문화예술전시·공연행사 홍보 및 기록유지
7. 공연계획 및 공연장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연물 제작·홍보 및 공연물품 수급에 관한 사항
9.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10.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관리
11. 전시계획 및 전시실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 관리 및 미술활동의 홍보·보급에 관한 사항
13. 전시 소품, 공연 소품 유지관리
14. 기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15.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제6절(제46조 및 제4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46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7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 방호·방화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관리

5.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 운영관리
8. 궁도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부주산 체육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0.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제7절(제48조 및 제4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목포자연사박물관

제48조(소장의 직급)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9조(분장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입장권 매·검표 관리
2. 재산관리·청사 시설유지 관리 및 방화·방호에 관한 사항
3. 전시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5. 박물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운영 관리
6. 박물관에 관한 백서, 간행물의 제작 및 대외홍보 사항
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 개최
8. 박물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계획수립 및 시행
9. 박물관 잔디공원, 비파원 및 주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의 조사·연구 및 수집,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13. 소장품 관리·전시 및 전산화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장품 훈증 및 소득, 복원에 관한 사항
15. 소장품 보존 환경조사 연구 및 지원 사항
16. 자연사에 속하는 지질, 동·식물, 곤충, 해양생물, 조·포유류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연사 및 향토사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및 지원
18. 향토문화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9. 학술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20.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관리
21.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수장고 소장유물 관리

22.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회 개최
23.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2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수집 및 연구
25. 도자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6. 체험공방 프로그램 운영
27.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품 관리
28.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
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
30.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회 개최
3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32. 그 밖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감사실,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 을 “**감사실,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기업유치과, 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를 “**기업유치과,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로 한다.

②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문예시설관리과**” 를 “**문예시설관리사무소**” 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0. (생 략) <신 설>	제11조(자치행정과) ----- -----. 1. ~ 120. (현행과 같음) 121.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정·현원 관리 122. 공무원근로자 임면 및 징계 123.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124. 공무원근로자 인사위원회 운영 125. 공무원근로자 근무성적평정 관리 126. 공무원 임금결정 및 퇴직금 지급 127. 공무원근로자 4대 사회보험 업무 128. 공무원근로자 호봉 관리 129. 공무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130. 기간제근로자 임금결정 131.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 운영
제12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전시 비축 물자관리 9. ~ 14. (생 략) 15. 거주외국인 각종 재해시 응급구호 및 지원 16. ~ 78. (생 략)	제12조(사회복지과) ----- -----. 1. ~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 ~ 14. (현행과 같음) 15. <삭 제> 16. ~ 78. (현행과 같음)
제14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4. (생 략) <신 설>	제14조(여성가족과) ----- -----. 1. ~ 74. (현행과 같음) 75. 보호대상아동 상담·가정환경조사 76. 보호대상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제2장 제4절 관광문화체육국

제16조(관광문화체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예시설관리과장·체육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신 설>

제18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0. (생 략)

<신 설>

제19조 (생 략)

제20조 ~ 제22조 (생 략)

제2장 제5절 경제산업국

제23조 ~ 제29조 (생 략)

제2장 제6절 안전도시건설국

제30조 ~ 제31조 (생 략)

77.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제2장 제4절 관광문화체육국

제16조(관광문화체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총괄 관리
2. 관광거점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3. 관광거점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관광거점도시 브랜드 구축
5. 관광 거버넌스 구축

제19조 (문화예술과) -----
-----.

1. ~ 40. (현행과 같음)

41. 목포문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삭 제>

제21조 ~ 제27조(현행 제23조부터 제29조
까지와 같음)

제28조 ~ 제29조(현행 제30조부터 제31조
까지와 같음)

제32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2. (생 략)

<신 설>

제33조 ~ 제35조 (생 략)

제3장 보건소

제36조 (생 략)

제37조 (생 략)

① ~ ② (생 략)

③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9. (생 략)

<신 설>

제4장 사업소

제1절 환경수도사업단

제38조 ~ 제39조 (생 략)

제2절 도시발전사업단

제40조 ~ 제41조 (생 략)

제3절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제42조 (생 략)

제43조 (생 략)

1. ~ 17. (생 략)

제30조 (안전총괄과) -----
-----.

1. ~ 152. (현행과 같음)

153. 전시 비축 물자관리

154. 거주외국인 각종 재해시 응급구호 및 지원

155. 재난관리 시설 운영

제31조 ~ 제33조(현행 제33조부터 제35조
까지와 같음)

제34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제35조 (현행 제37조와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건강증진과장은 -----.

1. ~ 39. (현행과 같음)

40. 급성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총괄

제36조 ~ 제37조(현행 제38조부터 제39조
까지와 같음)

제38조 ~ 제39조(현행 제40조부터 제41조
까지와 같음)

제40조 (현행 제42조와 같음)

제41조 (현행 제43조와 같음)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절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제44조 (생 략)

제45조 (생 략)

1. ~ 8. (생 략)

9. (생 략)

10. ~ 17. (생 략)

<신 설>

18. 하수·분뇨유입·유출 수질분석과 시험
기기 운영 및 약품처리 관리

제42조 (현행 제44조와 같음)

제43조 (현행 제45조와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 17. (현행과 같음)

제5절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제44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5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방호·방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입장권(열람권) 등의 발급·검인·검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3. 재산관리·시설물 종합관리 및 개보수
등 영선에 관한 사항
4. 조경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냉난방, 통신, 전기, 기계, 음향, 소방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6. 문화예술전시·공연행사 홍보 및 기록유지
7. 공연계획 및 공연장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연물 제작·홍보 및 공연물품 수급에
관한 사항
9.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10.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관리
11. 전시계획 및 전시실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 관리 및 미술활동의 홍보·보급에
관한 사항
13. 전시 소품, 공연 소품 유지관리
14. 기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5.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46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7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 방호·방화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관리
5.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 운영관리
8. 궁도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부주산 체육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0.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절 목포자연사박물관

제48조(소장의 직급)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9조(분장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입장권 매·검표 관리
2. 재산관리·청사 시설유지 관리 및 방화·방호에 관한 사항
3. 전시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5. 박물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
6. 박물관에 관한 백서, 간행물의 제작 및 대외홍보 사항
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 개최
8. 박물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계획수립 및 시행
9. 박물관 잔디공원, 비파원 및 주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의 조사·연구 및 수집,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13. 소장품 관리·전시 및 전산화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장품 훈증 및 소독, 복원에 관한 사항
15. 소장품 보존 환경조사 연구 및 지원 사항
16. 자연사에 속하는 지질, 동·식물, 곤충, 해양생물, 조·포유류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연사 및 향토사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및 지원
18. 향토문화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9. 학술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20.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관리
21.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수장고 소장유물 관리
22.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회 개최
23.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2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수집 및 연구
25. 도자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6. 체험공방 프로그램 운영
27.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품 관리
28.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
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
30.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회 개최
3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32. 그 밖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 발췌본 】

관 계 법 령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목포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과 본청의 실과단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31, 2011·6·20, 2014·5·12>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단·소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0-1969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8.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민선7기 시정 역점사업 추진 강화 및 신규행정 수요에 선제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20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맞추어 정원관리기관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각각 조정하고,
- 관리운영 직군의 퇴직자에 대하여 그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일반·기술직군으로 이체 조정하며,
- 직급별·직렬별 불균형 해소, 정·현원 불부합 조정, 불합리한 복수직렬 조정 등 효율적 조직운동을 위하여 동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현 행	1,296	621	23	98	263	291
개 정	1,296	575	23	98	310	290
증 감	-	△46	-	-	⊕47	△1

나. 직종별 정원 조정내역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현 행	1,296	1	1,275	17	3
개 정	1,296	1	1,275	17	3
증 감	-	-	-	-	-

다.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
《일 반 직》

구 분	계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1,275	10	68	248	328	340	281
개 정	1,275	10	69	256	328	336	276
증 감	-	-	⊕1	⊕8	-	△4	△5

※ 정무직(1), 연구직(17), 지도직(3)은 변동없음

라. **직렬별** 정원 조정 내역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합 계	-	⊕2	-	-	△2	-
5급 소 계	⊕1	⊕1				
행정+시설		⊕1				
6급 소 계	⊕8	⊕4		⊕1	⊕3	
행 정	⊕1	⊕1				
세 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공업+환경	⊕1				⊕1	
보건+간호	⊕1			⊕1		
운 전	⊕1	⊕1				
토목운영	⊕1				⊕1	
사무운영	⊕1				⊕1	
7급 소 계	-	-		⊕2	△2	
행정+사회복지	△1	△1				
세 무	△1	△1				
사회복지	⊕3	⊕3				
환 경	⊕1				⊕1	
시 설	⊕2	⊕2				
간 호	⊕2			⊕2		
운 전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1	△1				
기계운영	△2	△1			△1	
사무운영	△1				△1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8급	소 계	△4	△1		△3	-
	세 무	⊕1	⊕1			
	사회복지	⊕1	⊕1			
	공업+환경	△1			△1	
	공 업	⊕2			⊕2	
	환 경	⊕1			⊕1	
	시 설	-	-			
	간 호	△3			△3	
	위 생	△1	△1			
	방재안전	△1	△1			
	기계운영	△1			△1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1	△1			
9급	소 계	△5	△2		△3	
	행 정	△2	△2			
	세 무	△1	△1			
	사회복지	△4	△4			
	방 호	△2			△2	
	공 업	⊕1	⊕2		△1	
	해양수산	⊕1	⊕1			
	환 경	⊕1			⊕1	
	시 설	⊕1	⊕1			
	방재안전	⊕1	⊕1			
	사무운영	△1			△1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조표 : 별첨

5.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해당없음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없음

7. 예산 수반사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계	-	-	99,715,380	442,888,090	
5급	1	1	92,496,110	92,496,110	연봉
6급	8	8	90,117,240	720,937,920	25호봉
8급	△4	△4	43,943,910	△175,775,640	3호봉
9급	△5	△5	38,954,060	△194,770,300	1호봉

8.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제30조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제5조

9. 입법예고 : 2020. 12. 18. ~ 12. 22.(4일간)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행정조직내 부 인력 조정 사항이며, 조직개편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축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한 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0.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소요 추계서 (1)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9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5	△5	△5	38,954,060	△194,770,300	1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9급 1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38,954,060		
○ 인건비	28,530,870		
- 기본급	19,713,600	1,642,800원*12월	
- 수당	8,817,270		
•정액급식비	1,680,000	140,000원*12월	
•명절휴가비	1,971,360	1,642,800원*60%*2회	
•연가보상비	942,870	1,642,800원*86%*1/30*20일	
•시간외수당	4,223,040	8,798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740,000	145,000원*12월	
○ 이전경비	8,683,190		
- 성과상여금	2,460,080	2,236,440원*110%	A등급
- 연금부담금 등	5,019,65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5.3361%	
- 국민건강보험금	1,091,58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335%	
- 장기요양보험금	111,880	(건강보험금*10.25%)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

비용소요 추계서 (2)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8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4	△4	△4	43,943,910	△175,775,640	3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8급 3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43,943,910		
○ 인건비	32,290,400		
- 기본급	22,117,200	1,843,100원*12월	
- 수당	10,173,200		
•정근수당	552,930	1,843,100원*15%*2회	
•정액급식비	1,680,000	140,000원*12월	
•명절휴가비	2,211,720	1,843,100원*60%*2회	
•연가보상비	1,056,710	1,843,100원*86%*1/30*20일	
•시간외수당	4,671,840	9,733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740,000	145,000원*12월	
○ 이전경비	9,913,510		
- 성과상여금	2,893,250	2,630,230원*110%	A등급
- 연금부담금 등	5,662,65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5.3361%	
- 국민건강보험금	1,231,40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335%	
- 장기요양보험금	126,210	(건강보험금*10.25%)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

비용소요 추계서 (3)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6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8	8	8	90,117,240	720,937,920	25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6급 25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90,117,240		
○ 인건비	69,644,010		
- 기본급	49,258,800	4,104,900원*12월	
- 수당	20,385,210		
•정근수당	4,104,900	4,104,900원*50%*2회	
•정근수당 가산금	1,560,000	130,000원*12월	
•정액급식비	1,680,000	140,000원*12월	
•명절휴가비	4,925,880	4,104,900원*60%*2회	
•연가보상비	2,353,470	4,104,900원*86%*1/30*20일	
•시간외수당	5,760,960	12,002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980,000	165,000원*12월	
○ 이전경비	18,493,230		
- 성과상여금	4,096,530	3,724,120원*110%	A등급
- 연금부담금 등	11,612,58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5.3361%	
- 국민건강보험금	2,525,28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335%	
- 장기요양보험금	258,840	(건강보험금*10.25%)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

비용소요 추계서 (4)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5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1	1	1	92,496,110	92,496,110	

3. 비용 소요 내역

(연봉제 전환자)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총 계	92,496,110	
○ 연봉액(① + ② + ③)	70,415,240	
①2019년도 급여연액	64,282,870	
- 봉급연액	49,258,800	4,104,900원*12월
- 정근수당	4,104,900	4,104,900원*50%*2회
- 정근수당 가산금	1,560,000	130,000원*12월
- 관리업무수당	4,433,290	4,104,900원*108%
- 명절휴가비	4,925,880	4,104,900원*120%
②2020년 기본급 인상분	2,035,840	①*3.167%
③성과연봉	4,096,530	A등급
○ 수당	4,304,140	140,000원*12월
- 정액급식비	1,680,000	140,000원*12월
- 연가보상비	2,624,140	5,867,940원*78%*86%*1/30*20일
○ 직급보조비	3,000,000	250,000원*12월
○ 이전경비	14,776,730	
- 연금부담금 등	11,919,12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5.3361%
- 국민건강보험금	2,591,94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335%
- 장기요양보험금	265,670	(건강보험금*10.25%)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 정 >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1,296	575	23	98	310	290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275	568	23	98	296	290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69	26	3	3	14	23
	6급	256	127	4	14	64	47
	7급	328	173	7	15	82	51
	8급	336	122	8	52	77	77
	9급	276	114	0	13	57	92
연구직	계	17	4			13	
	연구관						
	연구사	17	4			13	
지도직	계	3	2			1	
	지도관						
	지도사	3	2			1	

< 개 정 >

[별표 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직렬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1,296	<u>575</u>	23	98	<u>310</u>	<u>290</u>
정무직		합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275	<u>568</u>	23	98	<u>296</u>	<u>290</u>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9	5	1	1	2	
		행정		3	3				
		기술		1			1		
		행정+기술		5	2	1		2	
	5급	소계		<u>69</u>	<u>26</u>	3	3	<u>14</u>	23
		행 정		19	7	1			1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u>17</u>	<u>9</u>	1		<u>4</u>	3
		행정+학예연구관		1	<u>0</u>			<u>1</u>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일반직	6급	소계		<u>256</u>	<u>127</u>	4	<u>14</u>	<u>64</u>	47
		행 정		<u>60</u>	<u>31</u>	3		4	22
		세 무		<u>7</u>	<u>7</u>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사회복지	8	3				5
		방 호	1				<u>1</u>	
		공 업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1			1		
		시 설	3	1			2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u>23</u>	<u>11</u>				12
		행정+전산	8	7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u>7</u>	<u>4</u>			3	
		행정+시설	47	<u>27</u>			<u>20</u>	
		행정+학예연구사	2				<u>2</u>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u>2</u>				<u>2</u>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u>6</u>			<u>3</u>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시설	<u>7</u>	6			<u>1</u>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시설+녹지+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사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u>1</u>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운 전	<u>4</u>	<u>3</u>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토목운영	<u>1</u>				<u>1</u>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u>2</u>	1			<u>1</u>	
일반직	7급	소계	328	173	7	15	82	51
		행 정	111	57	6		18	30
		세 무	<u>22</u>	<u>21</u>			1	
		사회복지	<u>35</u>	<u>17</u>				18
		전 산	6	<u>5</u>			<u>1</u>	
		방 호	1				1	
		공 업	32	<u>13</u>			<u>19</u>	
		농 업	2	2				
		녹 지	3				3	
		해양수산	5	5				
		보 건	1	1				
		의료기술	1			1		
		간 호	<u>3</u>			<u>3</u>		
		환 경	<u>5</u>				<u>5</u>	
		시 설	<u>27</u>	<u>19</u>			8	
		방송통신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u>6</u>	<u>3</u>				3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5	1			4	
		행정+시설	4	3			1	
		행정+학예연구사	1	<u>0</u>			<u>1</u>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6	1		5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 전	<u>14</u>	<u>5</u>	1		8	
		위 생	2	1			1	
		토목운영	<u>0</u>				<u>0</u>	
		건축운영	<u>1</u>				<u>1</u>	
		전기운영	3				<u>3</u>	
		기계운영	<u>3</u>				<u>3</u>	
		열관리운영	1				<u>1</u>	
		사무운영	<u>1</u>	<u>1</u>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8급	소계	336	122	8	52	77	77
		행 정	94	46	1		17	30
		세 무	11	9			2	
		사회복지	46	12				34
		속 기	3		3			
		전 산	2	1	1			
		공 업	16	3		1	12	
		농 업	1	1				
		녹 지	5				5	
		해양수산	4	4				
		보 건	5			5		
		식품위생	2			2		
		의료기술	5			5		
		간 호	31	1		30		
		환 경	2				2	
		시 설	28	17			11	
		방송통신	3	1			2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2	2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5			1	
		행정+방재안전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3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0	0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방 호	1	1				
		운 전	14	6	1		7	
		위 생	0	0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	2			4	
		기계운영	6	0			6	
		열관리운영	0	0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3		1		2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9급	소계	276	114	0	13	57	92
		행 정	83	33			6	44
		세 무	4	4				
		전 산	3	3				
		사회복지	70	27		3		40
		공 업	17	6			11	
		농 업	1	1				
		녹 지	3				3	
		해양수산	2	2				
		보 건	6			6		
		환 경	4				4	
		시 설	19	15			4	
		방송통신	3	2			1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전산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4	2			2	
		행정+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방 호	0	0				
		운 전	21	6		3	12	
		시설관리	2	1			1	
		건축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0	1			9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7	3			1	3
연구직		연구사합계	17	4			13	
		학예연구사	11	3			8	
		환경연구사	5				5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사합계	3	2			1	
		농촌지도사	3	2			1	

신·구조문 대비표(별표1)

현행								개정안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1,296	621	23	98	263	291	총 계		1,296	575	23	98	310	290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275	609	23	98	254	291	일반직	계	1,275	568	23	98	296	290
	3급	1	1						3급	1	1				
	4급	9	5	1	1	2			4급	9	5	1	1	2	
	5급	68	28	3	3	11	23		5급	69	26	3	3	14	23
	6급	248	133	4	13	51	47		6급	256	127	4	14	64	47
	7급	328	181	7	13	76	51		7급	328	173	7	15	82	51
	8급	340	133	8	55	66	78		8급	336	122	8	52	77	77
	9급	281	128	0	13	48	92		9급	276	114	0	13	57	92
연구직	계	17	9			8		연구직	계	17	4			13	
	연구관								연구관						
지도직	연구사	17	9			8		지도직	연구사	17	4			13	
	지도관								지도관						
지도직	지도사	3	2			1		지도직	지도사	3	2			1	
	지도관								지도관						

신·구조문 대비표(별표2)

현행							개정안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1,296	621	23	98	263	291	총계	1,296	575	23	98	310	290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275	609	23	98	254	291	일반직 계	1,275	568	23	98	296	290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 정	1	1					행 정	1	1				
4급 소계	9	5	1	1	2		4급 소계	9	5	1	1	2	
행 정	3	3					행 정	3	3				
기 술	1			1			기 술	1			1		
행정+기술	5	2	1		2		행정+기술	5	2	1		2	
5급 소계	68	28	3	3	11	23	5급 소계	69	26	3	3	14	23
행 정	19	7	1			11	행 정	19	7	1			11
시 설	1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6	10	1		2	3	행정+시설	17	9	1		4	3
행정+학예연구관	1	1			0		행정+학예연구관	1	0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6급 소계	248	133	4	13	51	47	6급 소계	256	127	4	14	64	47
행 정	59	30	3		4	22	행 정	60	31	3		4	22
세 무	6	6					세 무	7	7				
사회복지	8	3				5	사회복지	8	3				5
방 호	1	1			0		방 호	1	0			1	
공 업	2				2		공 업	2				2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1			1			보 건	1			1		
시 설	3	1			2		시 설	3	1			2	
행정+세무	5	3			1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2	10				12	행정+사회복지	23	11				12
행정+전산	8	7	1				행정+전산	8	7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환경	5				5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8	5			3		행정+공업	7	4			3	
행정+시설	47	32			15		행정+시설	47	27			20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학예연구사	2	<u>2</u>			<u>0</u>		행정+학예연구사	2	<u>0</u>			<u>2</u>	
행정+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u>1</u>				<u>1</u>		공업+환경	<u>2</u>				<u>2</u>	
공업+시설	3				3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사	1				1		공업+환경연구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u>5</u>			<u>2</u>		3	보건+간호	<u>6</u>			<u>3</u>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 사회복지	2					2	행정+전산+ 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 방송통신	2	2					행정+전산+ 방송통신	2	2				
행정+공업+시설	<u>6</u>	6			<u>0</u>		행정+공업+시설	<u>7</u>	6			<u>1</u>	
행정+공업+ 학예연구사	1	1					행정+공업+ 학예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해양수산+ 시설	3	3					행정+해양수산+ 시설	3	3				
행정+보건+ 식품위생	1			1			행정+보건+ 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 학예연구사	1	1					행정+시설+ 학예연구사	1	1				
행정+시설+녹지+ 농촌지도사	1				1		행정+시설+녹지+ 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 환경연구사	1				1		공업+보건+ 환경연구사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의료기술+약무+ 간호	1			1			의료기술+약무+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행정+공업+시설+ 방송통신	1	<u>1</u>			<u>0</u>		행정+공업+시설+ 방송통신	1	<u>0</u>			<u>1</u>	
행정+농업+환경+ 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환경+ 농촌지도사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농업+수의 +농촌지도사	2	2					행정+농업+수의 +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 +환경연구사	1				1		공업+수의+환경 +환경연구사	1				1	
운전	3	2			1		운전	4	3			1	
건축운영	1	1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1	1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2				2		통신운영	1	1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전기운영+ 기계운영	1				1	
7급 소계	328	181	7	13	76	51	사무운영	2	1			1	
행정	111	57	6		18	30	7급 소계	328	173	7	15	82	51
세무	23	22			1		행정	111	57	6		18	30
사회복지	32	14				18	세무	22	21			1	
전산	6	6			0		사회복지	35	17				18
방호	1				1		전산	6	5			1	
공업	32	15			17		방호	1				1	
농업	2	2					공업	32	13			19	
녹지	3				3		농업	2	2				
해양수산	5	5					녹지	3				3	
보건	1	1					해양수산	5	5				
의료기술	1			1			보건	1	1				
간호	1			1			의료기술	1			1		
환경	4				4		간호	3			3		
시설	25	17			8		환경	5				5	
방송통신	3	3					시설	27	19			8	
행정+세무	3	3					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세무	3	3				
행정+전산	3	3					행정+사회복지	6	3				3
행정+공업	3	3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5	1			4		행정+환경	5	1			4	
행정+시설	4	3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학예연구사	1	<u>1</u>			<u>0</u>		행정+학예연구사	1	<u>0</u>			<u>1</u>	
전산+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6	1		5			보건+간호	6	1		5		
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 전	<u>15</u>	<u>6</u>	1		8		운 전	<u>14</u>	<u>5</u>	1		8	
위 생	2	1			1		위 생	2	1			1	
토목운영	<u>1</u>				<u>1</u>		토목운영	<u>0</u>				<u>0</u>	
건축운영	<u>2</u>	2			<u>0</u>		건축운영	<u>1</u>	<u>0</u>			<u>1</u>	
전기운영	3	1			<u>2</u>		전기운영	3	<u>0</u>			<u>3</u>	
기계운영	5	1			<u>4</u>		기계운영	<u>3</u>	<u>0</u>			<u>3</u>	
열관리운영	1	1			<u>0</u>		열관리운영	1	<u>0</u>			<u>1</u>	
사무운영	<u>2</u>	<u>2</u>					사무운영	<u>1</u>	<u>1</u>				
8급 소계	<u>340</u>	<u>133</u>	8	<u>55</u>	<u>66</u>	<u>78</u>	8급 소계	<u>336</u>	<u>122</u>	8	<u>52</u>	<u>77</u>	<u>77</u>
행 정	94	46	1		<u>16</u>	<u>31</u>	행 정	94	46	1		<u>17</u>	<u>30</u>
세 무	<u>10</u>	9			<u>1</u>		세 무	<u>11</u>	9			<u>2</u>	
사회복지	<u>45</u>	<u>11</u>				34	사회복지	<u>46</u>	<u>12</u>				34
속 기	3		3				속 기	3		3			
전 산	2	1	1				전 산	2	1	1			
공 업	<u>14</u>	<u>5</u>		1	<u>8</u>		공 업	<u>16</u>	<u>3</u>		1	<u>12</u>	
농 업	1	1					농 업	1	1				

현							개						
행							정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녹 지	5				5		녹 지	5				5	
해양수산	4	4					해양수산	4	4				
보 건	5			5			보 건	5			5		
식품위생	2			2			식품위생	2			2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 호	34	1		33			간 호	31	1		30		
환 경	1				1		환 경	2				2	
시 설	28	20			8		시 설	28	17			11	
방송통신	3	3			0		방송통신	3	1			2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2	2					행정+농업	2	2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5			1		행정+시설	6	5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재안전	1	1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4				4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3			보건+간호	3			3		
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0	0				
행정+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해양수산 +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사회복지+간호	1			1		
방 호	1	1					방 호	1	1				

현							개 정 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운 전	14	6	1		7		운 전	14	6	1		7	
위 생	<u>1</u>	<u>1</u>					위 생	<u>0</u>	<u>0</u>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	2			4		전기운영	6	2			4	
기계운영	<u>7</u>	<u>1</u>			6		기계운영	<u>6</u>	<u>0</u>			6	
열관리운영	<u>1</u>	<u>1</u>					열관리운영	<u>0</u>	<u>0</u>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u>4</u>	<u>1</u>	1		2		사무운영	<u>3</u>	<u>0</u>	1		2	
9급 소계	<u>281</u>	<u>128</u>	0	13	<u>48</u>	92	9급 소계	<u>276</u>	<u>114</u>	0	13	<u>57</u>	92
행 정	<u>85</u>	<u>35</u>			6	44	행 정	<u>83</u>	<u>33</u>			6	44
세 무	<u>5</u>	<u>5</u>					세 무	<u>4</u>	<u>4</u>				
전 산	3	3					전 산	3	3				
사회복지	<u>74</u>	<u>31</u>		3		40	사회복지	<u>70</u>	<u>27</u>		3		40
공 업	<u>16</u>	<u>7</u>			<u>9</u>		공 업	<u>17</u>	<u>6</u>			<u>11</u>	
농 업	1	1					농 업	1	1				
녹 지	3				3		녹 지	3				3	
해양수산	<u>1</u>	<u>1</u>					해양수산	<u>2</u>	<u>2</u>				
보 건	6			6			보 건	6			6		
환 경	<u>3</u>				<u>3</u>		환 경	<u>4</u>				<u>4</u>	
시 설	<u>18</u>	<u>14</u>			4		시 설	<u>19</u>	<u>15</u>			4	
방송통신	3	<u>3</u>			<u>0</u>		방송통신	3	<u>2</u>			<u>1</u>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전산	2	2					행정+전산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4	2			2		행정+시설	4	2			2	
행정+방재안전	<u>1</u>	<u>1</u>					행정+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시설+방재안전	<u>1</u>	<u>1</u>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현							개						
행							정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방 호	2	2					방 호	0	0				
운 전	21	9		3	9		운 전	21	6		3	12	
시설관리	2	1			1		시설관리	2	1			1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0	3			7		기계운영	10	1			9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8	4			1	3	사무운영	7	3			1	3
연구직계	17	9			8		연구직계	17	4			13	
학예연구사	11	8			3		학예연구사	11	3			8	
환경연구사	5				5		환경연구사	5				5	
기록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계	3	2			1		지도직계	3	2			1	
농촌지도사	3	2			1		농촌지도사	3	2			1	

【 관계법령 발췌본 】

관계법령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계법령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3.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3.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